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옥재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80
----------	------

발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

발의자: 옥재은 의원(1명)

찬성자: 고광민, 김영철, 김용호,  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 
김종길, 김지향, 김태수,  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 
서상열, 유정희, 윤기섭,  
이상욱, 이종태, 이희원,  
임춘대, 최민규, 허훈,  
홍국표 의원(22명)

### 1. 제안이유

- 기부채납 형태의 다양한 공공시설 수요 증가로 조성비용 예치대상을 일반 기반시설로 확대하고, 실질적 집행 주체가 조성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 뿐 아니라 시금고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성비용을 예치할 수 있는 대상을 당초 정비기반시설에서 기반시설 까지 확대하고, 예치기관을 구금고 뿐 아니라, 시금고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2조제6항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 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⑥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 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정비기반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자치구의 구금고 또는 시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2조(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) ① ~ ⑤ (생략)</p> <p><u>⑥ 구청장은 법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자치구의 구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2조(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⑥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정비기반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자치구의 구금고 또는 시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
⑦ ~ ⑨ (생략)	(7) ~ (9) (현행과 같음)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분	관련 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52조(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)제6항	△	[추계 곤란] 공공시설 조성비용 예치대상을 기준 정비기반시설에서 일반기반시설로 확대하고, 예치기관을 구금고 뿐 아니라 시금고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관련 세입 증가가 발생할 수가 있으나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바가 없는 현재로선 객관적·합리적 추계가 곤란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본 의안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기부채납 형태의 다양한 공공시설 수요 증가로 조성비용 예치대상을 일반기반시설로 확대하고, 실질적 집행 주체가 조성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 뿐 아니라 시금고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예치대상 및 예치기관 확대에 따라 관련 세입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바가 없는 현재로선 객관적·합리적 추계가 곤란함

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 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 
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 
추계분석관 김진형  
☎ 02-2180-7954  
e-mail : kjh0816@seoul.go.kr